



2022-08호

08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3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7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 9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14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7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 19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1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 25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28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30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34 웅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6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41 서울특별시의회,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45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성명 발표

최근 제·개정 법령

- 4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50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 5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9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64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질의
- 69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질의
- 73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 77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관련 질의
- 82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관련 질의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2.] [대전광역시조례 제5868호, 2022. 8. 12., 제정]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어린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제6조(병원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대전충남권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 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재활치료, 특수교육, 돌봄(상담·사례관리·정보제공·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말한다) 등에 관한 업무

제7조(병원의 위치) 병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567-10 일원에 둔다.

제8조(병원의 진료대상) ① 병원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진료수가등) ① 진료수가 및 약가

(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및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 등 제13조에 따른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진료수가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수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실에 대한 비용은 일반실 이용에 한정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어린이
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액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제11조(채용) ① 시장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에 장애어린이의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복무 등) 제11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복무, 교육, 수당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 교육,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병원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병원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 수급(需給)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 운영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국장, 병원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충남권 관계 공무원(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공의료전문가

4. 재활치료전문가

5. 그 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시행 2022. 8. 12.] [대전광역시조례 제5870호, 2022. 8. 12., 제정]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 및 소통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
3. 지역의 청년 종합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년활동 활성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자)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외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청년활동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년활동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시행 2022. 8. 4.] [경상남도조례 제5258호, 2022. 8. 4., 제정]

이 조례는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2. “농수산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등을 내항화물선·내항여객선을 통하여 섬지역에서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해상운송비 지원) 도지사는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등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인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육지에 유통·판매하는 농수산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및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해상운송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74호, 2022. 8. 10., 제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

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

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시행 2022. 8. 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24호, 2022. 8. 17., 일부개정]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7.>

1. “재난”이라 함은 어업인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선의 침몰 및 조난, 잠수 조업 중 사망·실종 사고를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선적을 둔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 어업인과 주소를 제주자치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3. “위로금”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위로금 지원대상)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어업인의 유가족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어업인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하고,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금액)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위로금의 청구)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32호, 2022. 8. 11., 제정]

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거동 불편, 고령, 교통 불편 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보건의료 서비스”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읍·면 순회진료 및 마을순회 이동진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소속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2. 외과적 상처 소독, 물리치료, 의사 진단에 따른 주사 치료
3. 기초 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
4.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진료비)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비 등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48호, 2022. 8. 11., 제정]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조정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2. 학계, 협회, 관련 기관·비영리민간단체 및 양산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

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안건 선정·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8. 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77호, 2022. 8. 5., 제정]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당호 모노레일”이란 예당관 광지에 부설한 모노레일(궤도)과 모노레일카, 그에 부속된 시설물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예당호 모노레일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예당호 모노레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란 예당호 모노레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휴무일”이란 예당호 모노레일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예당호 모노레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09:00~20:00
2. 하절기(3월~10월): 09:00~21:00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위탁 또는 사용허가 시 군수와 수탁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협의 조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휴무일) ① 예당호 모노레일의 정

기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예당호 모노레일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예당호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① 예당호 모노레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또는 예당호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36개월) 미만의 아동
3. 예산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12. 만 65세 이상 노인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예당호 모노레일의 운행 중 차체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 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후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당호 모노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협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예당호 모노레일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게시사항) 관리자는 예당호 모노레일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 ① 관리자는 승·하차장에 예당호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예당호 모노레일의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또는 사용허가) ① 군수는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허가

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예당호 모노레일 시설 관리 주의 의무
2. 예당호 모노레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의무
3.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의무

②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위탁 또는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당호 모노레일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예당호 모노레일의 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2.]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871호, 2022. 8. 2., 제정]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공원”이란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치유시설로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80-1 일원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공원 내 설치된 치유시설을 순차적으로 체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시설) 해양치유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진단실
2. 푸드 치유관
3. 해수 미스트 치유관
4. 족욕 치유장
5. 소리 치유관

6. 해조류 팩 치유관

7. 향기 치유관

8. 허브 맥반석 치유관

9. 그 밖의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해양치유공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해양치유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치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해양치유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해양치유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하 “치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예약) ① 치유 프로그램의 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이용료 반환)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이용 및 행위의 제한) ① 해양치유공원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치유공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치는 사람
3.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해양치유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 매점 등)
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2.]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20호, 2022. 8. 2., 제정]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신장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지시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피해일 당시 고성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군수는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군수는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 학술 세미나, 캠페인 및 홍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남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657호, 2022. 8. 1., 제정]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달서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이란 관리자가 예약·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놀이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산 2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

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14.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

3. 그 밖에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체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전예약제 운영) ① 관리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이 가능한 날짜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다만, 이용예정일 전날 및 이용예정일에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이로써 시설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442호, 2022. 7. 27., 제정]

이 조례는 생태관광지역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관리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운영,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지역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2.]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01호, 2022. 8. 12., 제정]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① 장

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장흥군 가축분뇨·퇴비 이용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
4. 그 밖에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 또는 퇴

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퇴비·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액비 이용에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 정책에 관한 사항
3. 퇴비·액비 이용 촉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4. 그밖에 퇴비 및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유통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참여·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성명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개원과 함께 청년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 '지방분권,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2개월간 학술논문 공모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제11대 개원과 함께 8월 10일부터 10월 14까지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는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기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참가 희망자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를 통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 하면 된다.

이번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는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청년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일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11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목소리가 의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될 예정이다.

해당 학술논문 공모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전문학회인 ‘한국지방의회학회(대표 이현출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회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문 심사하여 선정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한국지방의회학회에서 주제의 적합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본심사 대상을 선별하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본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블라인드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작 5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우수상(1편) 100만원, 우수상(1편) 50만원, 장려상(3편) 3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논문은 별도로 ‘당선작 발표회’를 개최하며, 청년이 직접 당선작 논문 발표와 함께 참석한 시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반영하는 공론의 자리가 마련 된다.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12명의 청년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이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청년 학술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평가대상 148개 조례, 입법평가연구용역 결과 최종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세종시 조례 8.5. 현재 1,057건)으로,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해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가결했다. (내역 붙임)

또한,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정종미 위원장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살펴, 객관적인 결과라도 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게 된다.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추진 성명 발표

대책위 구성 이후 첫 대정부 성명 발표
향후 서명운동·궐기대회 등 범도민 차원 총력 대응할 계획

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의결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라남도는 섬 지역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하고 국가 기간산업 시설도 밀집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대비한 필수 의료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지역 유출률이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향후 30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전남도민의 절반에 이르는 등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정부 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선국·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다” 며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의료인력 교육과 양성, 진료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남도민과 함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제12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 을 의결했다. 도의원 24명으로 구성한 대책위원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근 제·개정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2호, 2022. 8. 4., 제정]

1 제정이유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항만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 8.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안전교육의 종류,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또는 컨테이너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제2조)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정함.

나. 항만안전사고의 범위(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범위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함.

다.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종류 등(제5조 및 별표 1)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종류를 교육대상자별로 신규안전교육·정기안전교육 및 기초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해당 교육과정별로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등(제6조)

- 1)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2) 항만하역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제9조 및 별표 4)

- 1)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2) 관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 에서 ‘100분의 60’ 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 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으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별표 18 제2호 및 제4호)

-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별표 28)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투목 및 겨목 신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질의
-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질의
-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관련 질의
-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관련 질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의견22-0198, 2022. 7. 19., 전라남도 곡성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독자적인 자문기관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 등”이라 한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제1항),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질은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곡성군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자원봉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관계공무원, 곡성군의회의 의원 및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위원회는 곡성군 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이하 “조례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인 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하 “법령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

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근거자문기관과의 통합·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근거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근거자문기관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법령근거자문기관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보장협의체”라 한다)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인 자원봉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들 수 있을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설립목적 및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를 지원·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양자 모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의사항의 측면에서 곡성군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 중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실무협의체”라는 명칭이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실무협의체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협의체는 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자문기관이 아니라, 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보장협의체가 심의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무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독자적인 자문기관인 자원봉사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
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
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질의요지

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
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통영시 안전관리위원
회 운영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01, 2022. 7. 20., 경상남도 통영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데,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으려면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통영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통영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재난안전법에서는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제4호너목)과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제6호나목)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고를 예방하여 통영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영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이하 “통영시조례”라 한다)에 규정하는 것이 재난안전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면, 재난안전법 제11조에서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3항),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각 지역별 안전관리 정책과 구체적인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재난안전법 제11조제5항에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특색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인 “실무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하는 내용을 통영시조례에 규정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통영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통영시조례 제7조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제1항),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러한 간주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조정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다른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통영시조례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시
장, 통영소방서장, 통영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장,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제3조제2항)인 반면, 실무위원회
의 구성원은 “부시장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실무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통영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질의요지

안동시장은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의견22-0188, 2022. 7. 20., 경상북도 안동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공설시장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 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본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2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로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호)와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와 관련하여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안동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에서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해당하거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질의요지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97, 2022. 7. 20., 경기도교육청]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제11호)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것 인지는 사무의 성격,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제2호)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조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하는 조례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학교 내 가설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된 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취지는 학교시설물의 경우 건축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에서 감독청이 허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조례로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판단되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를 교육감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06, 2022. 7. 26., 경기도 가평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이러한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해당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인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야 수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제2항제2호).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

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 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 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

[의견22-0194, 2022. 7. 26., 충청북도 진천군]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진천군조례” 이라 함)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진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진천군의회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귀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다르게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

다”고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진천군이 진천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였다면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단순히 반복·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표지설명



제12대 전반기 충청도의회 정책위원회 출범

- 입법·정책연구 지원 및 대안 제시 통해 지방의회 역할·위상 강화 기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의 입법·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제12대 전반기 충청도의회 정책위원회'가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제12대 전반기 정책위원회에는 도의원 11명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 등 모두 20명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은 이인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가 선임됐다.

더욱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3개 소위원회도 편성했다. 제1소위원장(기획경제·교육 소관)은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제2소위원장(행정문화·복지환경 소관)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제3소위원장(농수산 해양·안전건설소방 소관)은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각각 맡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비전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맞게 행동으로 직접 실현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식 신임 정책위원장은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연구라는 정책위원회의 소임을 다해 도민이 일상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8호

- 발행일 | 2022년 8월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락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